

어르신 주거지원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주거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72,240천원	(국비)	(사비)72,24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형태 2133-7400	이나래 2133-7412	김진영 2133-741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68,800	(x-) 72,240	(x-) 3,440	(x-) 5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68,800	(x-) 72,240	(x-) 3,440	(x-) 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어르신 공동생활주택(노인의집) 운영	=	72,240천원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	- 월 임차료 지원 20,000,000원*105%	=	21,000천원
	- 임차보증금 인상분 48,800,000*105%	=	51,24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주거안정 보장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노인복지법 제8조(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조장)
 -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('11.7.1.)
 -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('15.5.6.)

□ 사업내용

- 37개소(LH 26개소, SH 2개소, 민간임차 9개소), 63명 거주
- 입소대상 :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
- 주거형태 : 50㎡ 정도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2~5명의 어르신 공동 거주
- 지원내용 :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(인상분) 및 부대비용 지원
 - ※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임차료 상승분 및 신규 임차비용 등 지원
- '24년도 소요예산(안) : 72,240천원
- 입소기간 : 최고 8년(이후 2년 단위로 연장 승인)
- 추진방법
 - 서울시에서 임차료 및 부대비용(중계수수료, 이사비용 등) 지원
 - 주택건축국(LH,SH)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아 각 자치구에서 입소대상 어르신 선정, 입소

□ 추진경위

- 신규계약,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구 요청시 지원

□ 2024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2,240	
임대료 및 부대비용	2024.01~2024.12	72,240	자치구 교부, 계약 갱신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○ 운영현황 37개소
2022년도	○ 운영현황 37개소
2023년도	○ 운영현황 37개소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공동주거가 가능한 공동주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독거어르신의 주거안정 및 고독감 해소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-) 80,000	(x-) 0	(x-) 0	(x-) 80,000	(x-) 47,412	(x-) 0	(x-) 32,588
2021	(x-) 580,000	(x-) 0	(x-) 0	(x-) 580,000	(x-) 16,328	(x-) 0	(x-) 563,672
2022	(x-) 56,000	(x-) 0	(x-) 0	(x-) 56,000	(x-) 52,181	(x-) 0	(x-) 3,819